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8503

제안연월일: 2025. 2.

제 안 자: 교육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상정경과

의안명	의안번호	대표발의자	발의일자	상정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	제639호	정을호의원	2024. 6.19.	○제416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의 (2024.7.24.)
	제4385호	김용태의원	2024. 9.27.	○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1차 전체회의 (2024.11.19.)

- 나. 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 2. 6.)는 이상 2건의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- 다. 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교육위원회(2025. 2.18.)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,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그 금리는 「국채법」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"120퍼센트"에서 "110퍼센트"로 하향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(안 제11조제2항).

또한 최근 고금리·고물가 등으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,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가산금 비율을 3%에서 2%로 인하했으나, 연체에 따른 청년들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연체금 총 한도를 인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

금의 9%에서 5%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2항 후단 중 "120퍼센트"를 "110퍼센트"로 한다. 제30조제2항 후단 중 "100의 9"를 "100분의 5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3 조제5항, 제27조제4항, 제28조제4항,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지되는 대출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대출 금리) ① (생 략)	제11조(대출 금리) ① (현행과 같
	승)
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	②
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	
과 실질금리, 대출원리금의 상	
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	
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. 이 경	
우 그 금리는 「국채법」에 따	
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	
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	
간 평균수익률의 <u>120퍼센트</u> 를	<u>110퍼센트</u>
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	
제30조(연체금) ① (생 략)	제30조(연체금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미	②
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	
아니한 때에는 고지에 의한 납	
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	
지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	
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	
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	
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	
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(가산	

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은 미납	
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	<u>100분의 5</u>
과하지 못한다.	